

조달청 오늘부터 201억대 입찰 진행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4일과 5일 201억 원 규모의 강원도내 시설공사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도내 입찰은 모두 5건의 시설공사로 100% 지역제한으로 진행되며 모두 적격심사로 진행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의 시설공사 입찰은 4일이며 가로등 설비 교체공사(입찰 추정가격 1억 2100만원)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의 시설공사 입찰은 5일로 진부 환승주차장 등 12개소 기반조성 공사(추정 가격 36억 5100만원)와 횡계 환승주차장 기반조성공사(추정가격 46억 9700만원) 등이다. 신관호

기술형입찰 비리 '벌점' 대폭 강화

조달청, 기술자문위 운영규정 개정

기존 1~10점서 3~15점 감점으로
설계 채점방식 '절대평가'로 전환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 심의 때 비리가 발생하면 벌점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기술형입찰의 설계 채점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조달청은 3일 기술형입찰에서 설계심의 비리와 입찰 담합, 부실 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이날 이후 공고되는 기술형입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기술자문위원회는 턴키, 대안,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는 대형 공사와 설계 공모에 대해 계약자 선정을 위한 설계도서(또는 기술제안서)를 심의하는 곳이다.

이번 규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설계 심의 비리에 대한 감점기준을 현행보다 2~3배 강화했다. 현재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 발생 시 처벌 벌점은 유형에 따라 1~10점까지 감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점이 3~15점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또 기술형입찰에서 입찰 담합(들러리

입찰)에 대한 감점 기준이 신설돼 2년동안 10점이 감점된다.

더불어 기술형입찰의 설계 채점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다. 기존 상대평가 방식은 설계품질과 관계없이 입찰참여자 순위에 따라 차등범위(5~10%) 내에서 확률적으로 설계 점수가 결정됐다. 하지만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면 설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부적격 점수(60점 이하) 부여가 원활해진다.

다만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설계점수 산정 방식은 절대평가 도입 시 일부 위원들의 편파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기존 방식대로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설계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2차 평가에서는 1차 평가 점수를 상대평가 점수로 환산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기술자문위원 자격 확인 및 불성실 위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해마다 시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과장은 "이번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은 기술형입찰의 일부 불합리한 설계평가 방식을 바꾸고, 설계 공모분야 심사위원 관리 기준을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

입찰담합 적발땐 2년간 벌점 10점... 사실상 참여 차단

뉴스 돋보기

기술형 설계심의 비리 처벌 강화

설계 부실해도 부적격 점수 부과 힘들었던 상대평가 부작용 개선 기술자문위원 임기 단축·심사 강화

조달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개정은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비리와 담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부적절한 낙찰자 선정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설계심의 비리 관련 벌점을 대폭 높인 것은 적발될 경우 향후 기술형 입찰 참여를 사실상 막겠다는 의지다. 또 설계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뀐 것은 부실설계 업체가 설계 보상을 지급받는 여지를 없애기 위한 장치다.

설계심의 비리 처벌 강화

조달청은 현재 집행하는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 발생 시 처벌 벌점은 유형에 따라 현재 1~10점까지 감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점이 3~15점으로 대폭 강화된다.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비리 감점기준

감점사유	감점 현행	개정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3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	5	감점부와 결정일부부터 1년
3.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5	감점부와 결정일부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15	감점부와 결정일부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 처분도 포함)	신설	10	감점부와 결정일부부터 2년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시 입찰담합 감점기준 신설

감점사유	감점 현행	개정	감점기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신설	10점	감점부와 결정일부부터 2년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방식

현행	개정
상대평가	1차평가: 절대평가 2차평가: 1차평가 점수를 상대평가 점수로 환산

유형별 감점을 살펴보면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현행 1점→3점)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2점→5점)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2점→5점) △심의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10점→15점)가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술형입찰이 대부분

근소한 점수차로 당락이 결정되므로 비리 관련 감점은 입찰 참여업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형입찰에 입찰담합에 따른 감점 기준(벌점 10점)을 마련한 것도 같은 의미다. 감점기간도 감점 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이 나 돼 적발된 사실상 2년간 기술형입찰 참여가 어려워 전망이다.

조달청은 기존에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서 들러리입찰 행위 같은 담합에 대한

감점이 없어 부실설계 제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설계평가 및 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조달청이 설계평가 방식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은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기존에는 항목·심의위원별로 5~10% 차등범위 내에서 확률적으로 설계 점수를 결정했다.

3개 업체가 참여할 경우,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는 1등 업체 점수가 100점이라면 2순위 업체는 최대 10% 차등범위 조항으로 인해 최하 90점, 3순위 업체는 최하 80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렇다보니 입찰에 2~4개 업체가 참여할 경우 설계 부적격 점수(60점 미만)가 나오기 힘들었다. 부실설계자에게 설계보상비가 지급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조달청은 1차 평가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설계안을 일단 평가한다. 이는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및 설계적격 여부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되면 2~4개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설계가 부실할 경우 부적격 점수인 60점 미만 업체가 나올 수 있다.

2차 평가에서는 1차 평가 점수를 상대평가 점수로 환산해 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

이는 현행 방식과 같다.

조달청은 부실설계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가능해져 들러리입찰 방지와 설계품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술자문위원 검증 강화

기술자문위원 임기도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 임기가 2년으로 턴키 심의 및 용역평가에 참여하는 다른 위원과 형성성 문제가 발생했다.

또 위원 자격 및 심사자격 성실도에 따른 위원 해촉사유를 신설했다. 위원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상습적인 혐의 불응, 심의불참 등의 경우 1년 임기 후 해촉하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해촉이나 제적 이외에도 위원 자격정지 기준도 새로 생겼다. 평가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심사 참여태도가 불성실하지만 해촉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대한 사후평가도 실시한다. 기술형입찰의 경우 해당 심의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설계공모 심사의 경우 사후평가 근거가 없었다. 이번 규정 개정에 심의 사후평가에 설계공모 심사를 포함시켜 그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 60점 미만 심사위원은 기술형입찰 사후평가 규정과 동일하게 심사위원 제척 또는 해촉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한상준기자 newspia@